

한 대비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국내 크루즈 관광 산업의 성장 저해 요인을 제거해 나감으로써 국내 크루즈 관광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2. 電子去來의 規制에 관한 研究

해사법학과 최진이
지도교수 황정원

미국이 '全世界的 電子商去來 基本計劃(A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을 천명한 이래, 電子去來는 세계적인 논의의 초점이 되었으며, 각국들과 EU는 電子去來에 있어 공동대응을 하는 등, 이러한 추세는 電子去來가 새로운 경제활동 수단으로서 경제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電子去來가 우리의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소비자 측면에서 본다면 새로운 디지털 경제정책 및 사회의 전통적 개념변화, 구매활동을 위한 정보수집과 배송비용과 시간절감, 購買行爲의 便宜性 增大, 상품 및 정보의 투명성, 그리고 다원화된 경쟁과 소비자의 선택권한 확대 등을 들 수 있고, 企業內部的인 측면에서는 인적·물리적인 공간자원의 절감으로 인한 경영의 효율화와 고객의 소비동향 파악이 용이하고, 서비스 개선이 가능하며, 중간물류 및 유통단계의 축소로 業務效率 및 비용의 절감, 효율적인 판촉활동 및 마케팅 전략 수립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활동의 페러다임 변화는 사회비용의 절감을 통한 국민생활 전반의 高費用構造 改善과 경제영역의 세계화, 관련기술의 개발촉진 등으로 인한 새로운 분야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電子去來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기술적·제도적인 보완이 우선 되어야 한다.

電子去來의 주요 저해요인으로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電子去來가 갖는 非對面 去來의 특성상 去來의 主體·時期·對象 등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契約의 取消나 撤回, 電子支拂制度에 대한 불신 등의 消費者 保護側面에서의 制度的·技術的 보완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電子去來의 標準化 및 規格化와 認證 및 保安節次의 강화 등의 해결이 선결과제이다.

이처럼 기존의 意思傳達媒體와는 여러 면에서 차이점을 갖는 전자적 매체를 이용한 거래가 일반 대중에게까지 급속히 보편화되면서 분쟁의 발생가능성 또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류의 去來를 규율하기 위한 法規整備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 지는 것이다. 따라서 電子去來의 장애를 제거하고 분쟁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法的 裝置의 整備方案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그 방안으로써 첫째, 契約에 의하는 경우, 去來 當事者가 기업인 때는(특히 EDI ; Electronic Data Interchange의 경우)에 데이터 交換協定을 체결하여 契約書에 의하여, 企業과 消費者間의 去來인 경우에는 約款에 의한 附合形式에 의해 當事者의 合意로 電子去來의 法的인 장애를 제거할 수 있고, 둘째, 立法的인 해결에 의하는 경우, 電子去來의 장애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하며, 당사자들의 法的인 분쟁 가능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立法的인 방안 내지 法解釋의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상공간을 이용한 去來에서 적용될 法規를 정립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대체로 세 가지 흐름이 있다. 첫째는 사이버 공간도 인간의 활동공간이기 때문에 현실공간과의 공통점을 갖

는다고 보고, 가능한 한 현실공간을 기초로 하는 既存의 法原理에서 類推하거나 既存法規를 類推適用하여 문제에 접근하고, 기존의 法理가 적용될 수 없는 부분에 관하여는 보충적으로 特別法을 制定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입장이며, 둘째는 사이버 공간은 현실의 세계와는 상이한 공간이지만 현실의 공간에 작용을 하면서 현실의 공간에 영향을 받는 등 현실의 공간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이버 공간에서 적용될 法은 현실의 공간을 기초로 한 現行法制度에 대한 전면적 修訂 乃至 再檢討를 통하여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고, 셋째는 사이버공간은 현실의 공간과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갖는 별개의 공간이라는 점을 전제로 기존의 法理와는 무관한 사이버 공간의 특성에 맞는 전혀 새로운 法原理와 체계를 정립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本 論文은 세 가지 입장 중, 첫 번째 입장에서 假想空間(cyber space)상의 契約法 측면, 즉 意思表示, 契約의 成立, 電子文書의 效力 등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論文的 구성은 電子去來의 前身이라 할 수 있는 기존의 EDI와 CALS의 개념을 살펴보고, 이들을 통한 電子去來를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두 번째, 電子去來에 관한 국제적인 규범화 논의와 그 立法現況, 그리고 각국의 法制現況을 고찰하고, 우리 나라 電子去來基本法과 UNCITRAL 모델법을 비교해 보았고, 세 번째, 電子去來가 갖는 특징들과 電子去來의 유형을 살펴본 다음 電子去來에서 발생할 수 있는 諸般 法律的인 문제, 즉 電子의 意思表示論, 意思表示의 發信과 到達에 따른 契約의 成立時期, 意思表示의 瑕疵와 不一致, 電子文書의 書面 代替可能性 등을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結論에서는 이제까지의 논의를 정리하고 電子去來의 원활·확실성을 위한 立法내지 關聯法規의 改正方向을 제시해 보았다.

3. 船級의 責任制限에 관한 研究

해사법학과 최 원 준
지도교수 황 석 갑

船級은 私的인 측면에서는 保險業者, 船舶所有者와 함께 海上運送企業의 중요한 3대 축의 하나이고 公的인 측면에서 보면 國際海事機構를 비롯한 國際機構들과 함께 海上에서의 人命과 財產을 保護하는 기술봉사단체이기도 하다. 즉, 船級은 海上에서의 人命과 財產의 保護라는 절대 절명의 임무를 수행하는 필수 불가결한 團體로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海洋事故로 인하여 한번에 모든 資産을 損害賠償金으로 지불하고 파산하여 버린다면 이로 인하여 船舶檢査管理의 공백이 생김으로서 海上安全이 직접적으로 위협받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따라서 船級은 이러한 破産危險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保險에 加入할 것이고 이는 檢査手數料의 引上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船級의 立場에서 보면 그러한 危險이 保險으로 커버되고 있으므로 檢査의 遂行에 있어서 보다 신중하지 못한 檢査를 誘發할 수도 있으며 船舶所有者의 立場에서 보면 責任을 지는 主體가 保險會社이며 그 保險金은 船舶所有者들이 負擔해야 하는 이상한 구조가 되어 버리는 問題點이 있다. 그렇다면 海上安全을 책임져야 할 船級의 가장 중요한 任務는 이러한 責任問題로 인하여 불분명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船級의 責任制限은 海上安全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라는 결론이며, 이러한 結論을 도출하는 가장 큰 이유는 船級의 存在意義에서 찾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